

대전고등법원(청주) 2023. 1. 18 선고 2022나50728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대전고등법원(청주) 2023. 1. 18 선고 2022나50728 판결

청주지방법원 2022. 6. 8 선고 2020가합14595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지영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열린법률

담당변호사 이종훈

변론종결 2022. 12. 7.

판결선고 2023. 1. 18.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22. 6. 8. 선고 2020가합14595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서 2016. 9. 1. 체결된 영업양도양수계약을 239,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3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서 2016. 9. 1. 체결된 영업양도양수계약을 361,706,25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61,706,25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주위적 청구를 확장하고,1) 예비적 청구는 취하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2면 아래에서 2행 “원고는”과 “채무자 회사의” 사이에 “2012. 7. 1.부터 2016. 3.

31.까지”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3면 아래에서 2행 괄호 안의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영업권양도계약’이라 하고, 위 계약에 의하여 양도하는 목적물을 ‘이 사건 영업권’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4면 표 안의 각 “피고”는 각 “乙”로, 각 “채무자 회사”는 각 “甲”으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5면 9~10행 [인정근거]의 거시증거 부분을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8호증, 을 제1~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쳐 쓴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채무자 회사에 연대보증채권 3억 5,000만 원 및 체불임금채권 11,706,252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채무자 회사는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영업권양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영업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이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영업권양도계약은 원고가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피보전채권 합계 361,706,252원(= 3억 5,000만 원 + 11,706,25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361,706,2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4. 4.경 채무자 회사의 실소유자인 E에게 3억 5,000만 원을 대여하고 채무자 회사가 이를 연대보증 한 사실, 채무자 회사는 원고가 채무자 회사의 직원으로 일하는 기간(2012. 7. 1. ~ 2016. 3. 31.) 동안 총 11,706,252원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영업권양도계약이 2016. 9. 1. 체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위 연대보증채권과 체불임금채권은 이 사건 영업권양도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이미 성립되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위 연대보증채권과 체불임금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연대보증채권에 관한 관련소송이 2019. 4. 10. 확정되었으므로 위 연대보증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보전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그 액수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104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영업권양도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위 연대보증채권이 성립되었음이 분명한 이상 관련소송의 경과와는 무관하게 위 연대보증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어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가 추정되는바(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등 참조),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법인인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영업권을 양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 역시 그 양도 목적이 채무의 변제 또는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해 사해행위가 되어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영업권양도계약은 채무자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영업권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것으로서 원고를 비롯한 채무자 회사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어 채무자 회사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채무자 회사는 그 실소유자인 E이 2013. 12. 28. G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한 것을 연대보증 하여 그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합계 361,706,252원의 연대보증채무와 체불임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2016. 9. 1. 기준으로 국세 67,976,850원 등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다.

나) 채무자 회사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영업권이 전부인 것으로 보이는데, 2016. 9. 1. 이 사건 영업권양도계약 시 이 사건 영업권의 가치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427,000,000원으로 평가되었는바, 채무자 회사는 이 사건 영업권양도계약 전부터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더욱이 이

사건 영업권양도계약을 통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영업권을 양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꿈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채무자 회사의 일반채권자들이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채권을 회수하기 현저히 곤란하게 만들었다.

3) 수익자의 악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채무자의 행위가 채권의 공동담보 부족을 초래하여 일반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 회사의 악의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채무자 회사가 G에 대하여 10억 원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등 이 사건 영업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을 제5~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채무자 회사의 사해행위 당시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3, 4,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대표이사 J가 2003년경부터 2007. 8. 29.까지 채무자 회사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 피고는 2007. 6. 27. 설립된 후 2018. 12. 17.까지 채무자 회사와 같은 사무실(청주시 흥덕구 1빌딩 3층 사무실)을 사용하거나 같은 빌딩 위층 또는 아래층 사무실을 사용한 사실, 채무자 회사는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 이후 더 이상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휴면회사가 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이 사건 영업권양도계약을 체결할 당시 채무자 회사의 행위로 인하여 채권의 공동담보 부족을 초래하여 일반채권자를 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

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1) 원상회복의 방법

영업양도 후 종래의 영업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하면서 동일성을 유지한 채 채무자에게 회복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보전채권액을 한도로 하여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포함된 일체로서의 영업의 가액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84162 판결 등).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영업권이 이 사건 영업권양도계약 이후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채무자 회사에 회복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라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을 한도로 하여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영업권양도계약이 체결된 이후로 이미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는데, 이 사건 영업권은 채무자 회사가 주식회사 D이 제공하는 VAN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맹점을 모집유지관리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면서 신규 또는 이탈하는 가맹점이 발생하고, 그에 기하여 새로운 채권채무가 형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영업권양도계약 체결 이후 채무자 회사의 청주세무서에 대한 국세채권추심액을 변제하기도 하였다.

2)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사해행위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구하는 피보전채권은 361,706,252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0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주식회사 K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영업권의 가치는 2억 3,900만 원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영업권의 가치가 위 금액을 초과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과 이 사건 영업권의 가치 중 더 적은 금액인 2억 3,900만 원이 가액배상액이 된다.

가) 채무자 회사와 피고는 이 사건 영업권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2016. 8. 31. 기준 영업권산정합계금액(679,383,000원)에서 공제내역합계금액(252,219,936원)을 빼는 방법으로 이 사건 영업권의 양도대금(4억 2,700만 원, 10만 원 단위 절사)을 산정하였다. 그런데 위 공제내역의 항목은 프로젝트 공제건수, D 여신금액, CMS수수료, POS용지 외 기타 공제내역으로, 이는 이 사건 영업을 수행하면서 부담하는 비용 등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영업권의 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공제내역을 반영하는 것은 타당해 보인다.

나) 채무자 회사와 피고는 이 사건 영업권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영업권의 양도대금을 4억 2,700만 원으로 정하였으나, 이 사건 영업권양도계약 제2조에 의하면 위 금액은 1차 합의한 금액에 불과하며, 채무자 회사와 피고는 이 사건 영업권의 가치를 2017. 9. 30. 기준으로 다시 산정하여 양도대금을 정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최종계약에서 정해진 양도대금은 2억 3,900만 원이다.

다) ① 이 사건 최종계약서에는 피고가 채무자 회사에 2016. 9. 30. 이전까지 계약금 1억 2,000만 원을, 2017. 10. 31. 이전까지 잔금 1억 1,900만 원을 그 별첨계약 [대금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의한다는 내용(제3조 제1항, 제2항)과 피고가 채무자 회사에 양도대금 2억 3,90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한 부분(7,000만 원)은 채무자 회사가 차용한 것으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제3조 제4항), ② 별지 '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피고가 2016. 9. 5.부터 2017. 1.

25.까지 채무자 회사에(또는 채무자 회사를 위하여) 지급한 돈의 내역은 이 사건 최종계약서 별첨계약 [대금지급내역] 기재 중 같은 기간에 관한 부분과 일치하는 점, ③ 이 사건 최종계약서에서 피고가 이 사건 영업권양도계약을 체결한 2016. 9. 1. 전까지 채무자 회사에 지급한 것으로 인정한 금액 총 8,000만 원과 별지 ‘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피고가 2016. 9. 5.부터 2017. 1. 25.까지 채무자 회사에게 지급한 금액 총 221,479,520원의 합계에서 이 사건 최종계약서에 따라 채무자 회사가 피고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보기로 한 금액 7,000만 원을 빼면 231,479,520원(= 8,000만 원 + 221,479,520원 - 7,000만 원)이 되는데, 이는 이 사건 최종계약에서 정한 이 사건 영업권의 양도대금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최종계약서에 기재된 이 사건 영업권의 양도대금이 그 실제 가치보다 적게 기재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한편, 이 사건 최종계약서의 별첨계약 [최종산정내역]에 의하면 거래처수(영업권)는 총량이 2,300으로 기재되어 있으면서도 산정금액은 0으로 기재되어 있고, 프로젝트 현금전환, VAN사 여신금액, 프로젝트 공제건수 모두 총량과 산정금액이 0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거래처수(영업권)의 산정금액이 0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위 거래처수(영업권)의 총량이 VAN 승인수수료, CMS 출금액(월)을 산정하면서 반영되어 별도로 산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프로젝트 현금전환, VAN사 여신금액, 프로젝트 공제건수의 총량과 산정금액이 0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이 사건 영업권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공제내역에서 이미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마) 이 사건 최종계약서에 기재된 이 사건 영업권의 양도대금 외에는 그 가치를 알 수 있을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영업권양도계약에 의하여 양도되는 영업은 이 사건 최종계약 체결 이후에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수익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영업권의 가치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양도대금과 유사할 것으로 추인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영업권양도계약은 2억 3,9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2억 3,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 판사 원익선, 판사 김지건, 판사 장지웅

별지

지급내역

지급일자	비고	지급액(원)	서증
2016. 9. 5.	(주)C	10,000,000	갑 10-2
2016. 9. 13.	(주)C	5,000,000	갑 10-1
2016. 9. 23.	L	26,536,020	갑 10-1
2016. 10. 31.	C채권압류액	68,651,230	갑 10-2
2016. 10. 31.	(주)C	31,348,770	갑 10-2
2016. 11. 30.	(주)C	19,943,500	갑 10-1
2017. 1. 2.	(주)C	50,000,000	갑 10-1
2017. 1. 25.	(주)C	10,000,000	M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합계		221,479,520	

끝.

1) 피고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는바, 이는 피고에게 불리하게 되는 한도에서 부대항소를 한 취지로 본다.